

주제발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양 재 규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양 재 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지난 몇 달 동안 공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언론은 「○○○, 성폭행 혐의 피소」 내지 「△△△,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와 같은 식의 제목이 달린 기사를 당연히 보도한다. 물론, 언론보도는 대체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소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진행상황을 마치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건 관계자들의 전과나 이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세세하게 기사화한다.¹⁾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공인에 대한 고소이며 그 사실을 알리는 범죄혐의보도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일단,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뉴스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무려 29,86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8.2건이 발생했다

1) 유명 연예인 B 씨에 대한 한 중앙일간지 보도를 예로 들면, 2016년 6월 13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리는 「B, 성폭행 혐의 피소…피해 여성 “화장실에서 성폭행”」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다음날인 14일 「‘성폭행 혐의’ B 강남구청 출근 후 병가…경찰 “증거물 분석한 뒤 소환할 예정”」 및 「B 군복무 1/4은 연가나 병가」와 같이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군복무 태도에 관한 기사를 냈다. 같은 매체의 다른 유명 연예인 Y 씨 관련 보도에서는 2016년 8월 24일 오전 「Y, 마시지 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제하로 첫 기사를 내보낸 후에 같은 날 오후 「Y 고소녀, 8000만원 빚에 선불금 사기까지」 제하로 고소인의 채무관계 및 재산범죄 관련 의혹을 다뤘다.

(대검찰청, 2015, 13쪽). 이 중에서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바로 이 언론의 선택을 받은 해당 사건들이 ‘뉴스가치’가 있는 범죄인 것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 범죄의 유형은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라 신분이 높거나 저명한 사람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인 범죄라는 것(Stephens, 2010, 141쪽)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관행을 연구한 노성호·이기웅(1996)은 유명한 관련 사건에 높은 기사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 언론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대중은 유명 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 소비자들의 특성을 보도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뉴스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성과 관련된 사건 역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인의 성범죄 혹은 성범죄 의혹은 지대한 인간적 관심사로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보도 시점의 문제다. 현재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대체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공인의 성범죄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보도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의 ‘시의성(timeliness)’이라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은 해당 정보의 ‘시의성’이 가장 큰 순간으로서 이 순간을 놓치면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제기 여부를 소추자가 판단하고,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 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보도하고 마는 것이다(김기창, 2005, 19쪽). 그런데 이 시점이 정보의 시의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몹시 낮은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소사실을 공개하거나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²⁾

다음으로, 고소 사건의 문제다.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에 뒤따르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는 비

2) 실제로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혐의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교적 쉽고, 자유로운 편이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도 고소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박용상, 2008, 735쪽).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2016년 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회의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기사를 낸 218개 매체(2016안건385-602)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위 기사는 연예인이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소장 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범죄 혐의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로 인해 독자들은 피고소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고소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사실 및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 결정문 중 발췌)

세 번째로, 성폭행범죄가 갖는 특수성의 문제다. 일반적인 범죄혐의와 마찬가지로, 성폭행범죄혐의 또한 무죄 혹은 무혐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결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들은 개인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을 폭로한 셈이 된다. 이것은 사회적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라든가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와는 구별되는 성폭행범죄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

3)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

혐의보도는 설령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 내지 보도관행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 연구한 박용규(2001)에 따르면, 범죄보도의 80% 이상이 재판 전 단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5년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한 중앙일간지에 기사화된 범죄보도의 사건처리단계별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검찰조사 단계 및 재판과정에서의 범죄보도의 비율이 1.4%에서 18.2%, 14.9%에서 2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단계의 범죄보도 비율은 1935년 8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가 1956년 79.9%, 1976년 76.8%, 1996년 60.8%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일반적인 범죄보도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혐의보도, 그 중에서도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법적 관점에서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다. 현재까지 범죄보도 일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범죄혐의보도, 그 중에서도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논의의 대상을 범죄보도 일반으로 하기에는 다뤄야할 쟁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언론법제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범죄보도 일반에 속하는 쟁점들, 예를 들면 익명보도의 원칙이라든가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문제는 제외하기로 한다.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만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유사한 용어들로 인한 의미의 혼란을 막고자 ‘범죄보도’ ‘범죄혐의보도’ ‘범죄사실보도’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기준으로 단순한 혐의내용만을 보도한 경우를 ‘범죄혐의보도’로 하고 단순 혐의보도를 넘어 범죄혐의가 확실한 것처럼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유죄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보도는 ‘범죄사실보도’로 명명했다. ‘범죄보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4)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의 성범죄혐의보도다. 이들은 공인으로서 ‘익명보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보도에서 주로 논의되는 ‘익명보도’ 관련 사항은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연구문제 1)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연구문제 2)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인가?

(연구문제 3)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가?

II.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명예훼손

1.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 익명보도와 혐의보도

범죄보도는 누군가의 일탈행위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범죄라는 일탈행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규범)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당연히 명예훼손적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명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외적 평가이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범죄보도가 명예 주체의 인격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보도는 그 행위주체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다. 범죄보도가 갖는 이러한 명예훼손적 효과로 인해 법원 판결을 토대로 확립된 범죄보도 관련 중요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익명보도의 원칙’이다. 대법원은 범죄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⁵⁾다는 이유로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⁶⁾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범죄의 주체가 공인이 아닌 한 익명으로 보도하라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보도할 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⁷⁾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無理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⁸⁾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혐의에 관해 기사를 쓰면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범죄사실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설령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조차 삼가야 한다. 그런 기사는 피의자가 범인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단순 혐의보도에서 멈춰야 한다.⁹⁾ 이것이 말하자면, ‘혐의보도의 원칙’이다. 만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혐의보도의 원칙을 어기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언론사로서는 해당 범죄혐의가 진실이라는 증명을 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이러한 증명의 실패는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¹⁰⁾

2. 단순 혐의보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익명보도와 단순 혐의보도는 범죄보도에 적용되고 있는 핵심 원칙이다. 문제는 단순 혐의보도 또한 명예훼손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 보도에 언급된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추정, 즉 단순한 범죄혐의의 공개만으로도 그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죄추정인 것이다. 단순한 혐의는 후에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될 개연성이 크며,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범죄혐의자를 범죄보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다(박용상, 2008, 712~713쪽).

물론, 이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2000년 11월 22일 SBS는 <한밤의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에서 「A 성폭행 혐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유명 연예인 이자 사업가였던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9)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범죄보도에는 제목이나 본문 중에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해당 사건이 수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게 되면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 혐의보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익명보도 문제와 같이 역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1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관련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BS의 해당 보도는 논란거리¹¹⁾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단순 혐의보도에 비교적 가까웠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음과 판시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유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방영하고 있어 시청자에게 원고가 단순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체액샘플을 방영하면서 자막으로 내보낸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는 표현 부분도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체액샘플 속에 원고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없지 아니하나 (중략)... 위 표현이 시청자에게 원고가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¹²⁾

단순 혐의보도로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본 이 판결(2002가합78777)의 결론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유죄라는 인상을 준 것이 아니라 고소당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했으므로 당사자를 비난했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원칙을 지켜 단순 혐의보도 선에서 그치면 당사자가 거의 문제 삼지 않으며 언론사로서는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¹³⁾ 우리 사회가 보다 신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법치를 구현하고 있다면 무죄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

11) 해당 방송 내용 중에는 피해자 관련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체액을 채취,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정액샘플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자막을 단 것이다. 이 자막만 놓고 보면, 마치 피해자의 체액 속에 A씨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흐름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 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8777 판결. 1심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피고 양측의 항소로 이루어진 2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되었다.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원고가 강간치상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동시에 원고의 조사받는 화면,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위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원고가 강간치상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55334 판결) 2심 법원은 1심에서와는 달리, SBS의 보도를 단순 혐의보도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질문, 즉 단순 혐의보도로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내려진 단순 혐의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드문 사례다.

13) 단순 혐의보도가 문제된 판결은 매우 드물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단순 혐의보도를 하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곧바로 추정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사회 일반의 통념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상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고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되는 것 자체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을 수 있다(한위수, 2016, 96쪽). 따라서 사회 일반의 통념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은 혐의보도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는 견해가 아닐까 생각한다.¹⁴⁾

3.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 혐의보도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범죄혐의보도 관련 논의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즉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적 측면으로만 국한시켜 매듭짓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론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범죄와 알권리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관계없이¹⁵⁾ 사회현상의 일부로서 사회적 관심사이며 따라서 언론이 보도해야 할 중요한 시사(時事)적 사항에 속한다(박용상, 2008, 707쪽). 또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대처를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므로 범죄학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14)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박용규(2001)의 논문(173쪽)은, 범죄보도가 재판 전 단계에만 집중됨으로써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에게는 피의자가 무조건 범인인 양 기억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5) 형법상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는 개인 간에 발생한 사사로운 문제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개인 간에 발생한 범죄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는 순간부터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며 따라서 사회적 관심사 내지는 공적 관심사라고 보아야 한다.

(박용상, 2008, 108쪽). 결국, 범죄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보도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범죄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⁶⁾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의 범죄보도가 갖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규범안정화 기능이다. 범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가 빈발하면 규범체계 나아가 사회 전반의 통치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보도는 범죄행위에 비판적 조명을 통해 현행 규범체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이진국, 2002, 26~27쪽).

다음으로는, 한계설정 기능이다. 범죄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한계를 벗어난 일탈행위라는 측면도 있다. 사회는 이러한 일탈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동체가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범죄보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 짓는 한계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진국, 2002, 24~25쪽).

마지막으로, 권력감시 기능이다. 정부 당국을 향한 대책 마련 촉구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Kovach & Rosenstiel, 2003, 171쪽). 범죄가 사람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 발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 내지는 정부 당국에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자로서 범죄보도를 통해 범죄 발생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추적, 공론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2) 범죄혐의와 알권리

이처럼 범죄보도를 알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해 규범체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일탈행위에 가해진 처벌을 알림으로써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한다. 나아가 정부 당국을 향한 범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보도의 의의가 아직 진위 여부조차 불확실한 범죄혐의보도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 범죄혐의보도는 범죄정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범죄 관련 보도는 대부분 성적인 문제나 마약, 음주운전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른바 ‘황색 저널리즘’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택수, 2002, 11쪽). 공익적 정보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가 크며 알권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에 가까운 것이다. 범죄보도에 알권리 내지 공공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세심하게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 내지 ‘범죄 행태’는 단순한 ‘혐의’가 아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확정사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 유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라면 유무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혐의사실만 가지고 해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나 여론형성을 거론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3)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 알권리의 세분화

물론, 범죄보도 일반에 적용되는 알권리 내지 공공성과는 다른,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고려할 만한 세부적인 알권리가 있을 수는 있다.

우선,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단순 혐의보도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형사고소·고발은 누구나 아무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용상, 2008, 735쪽). 나아가,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에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것

일 뿐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다. 수사 개시만으로는 결코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박용상, 2008, 738쪽).

다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익명에 의한 단순 혐의보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재판과는 달리 수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명보도는 곤란하다. 물론, 수사상 필요에 의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든가 어느 정도 유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실명에 의한 혐의보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수사 진행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비록 보도를 한 다손 치더라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익명에 의한 혐의보도에 그쳐야 한다.

본격적인 범죄혐의보도가 가능한 단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수사 진행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후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표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혐의가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난다 할지라도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 언론사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혐의보도가 아닌 범죄사실보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일 때로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공식발표가 아닌, 기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연예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사생활 침해

1. 성범죄혐의보도의 특수성

성범죄혐의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범죄혐의 보도가 일반적인 범죄혐의보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간,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는 성적 자유에 관한 죄로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김일수, 1996, 124쪽) 필연적으로 남녀의 성관계라는

매우 내밀한 생활영역을 다루게 된다. 물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이라든가 ‘피구금자간음’(형법 제303조 제2항)과 같은 일부 성범죄들은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 업무상의 관계 혹은 권력적 관계 하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를 제외하면 많은 성범죄들이 개인의 사적 영역, 그 중에서도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이처럼 성폭행범죄가 사적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라든가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 등은 주로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¹⁷⁾

한편, 성범죄혐의보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 초동수사 단계는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결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들은 개인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을 폭로한 셈이 되며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사생활의 보호범위와 생활영역 구분

성범죄혐의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부와 관련해 먼저 생활영역에 따라 사생활의 보호범위에 차등을 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관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17) 성범죄혐의보도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이러한 논의를 모든 범죄에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다수 범죄들은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5년 11월 24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을 일으킨 사인이 스스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놓고 정작 자신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은둔할 것이니 그 실명 또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상응한 불이익은 상당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5가단5682). 이 사건의 원고는 2012년 강도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주한 탈주범으로서 사건 당시 많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월간지가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탈주 사실을 재차 보도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성한다”¹⁸⁾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생활 공개가 항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재형, 2014, 42쪽). 다시 말해, 사생활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공개한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학계에서는 인간의 인격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고¹⁹⁾ 각 영역별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정하려는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²⁰⁾ 간략하게나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간의 생활영역에는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에서부터 공개될 수 있는 것까지 여러 단계의 영역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른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논하고 있다. 보호의 강도에 있어서 내밀 영역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공개 영역은 최저 수준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영역 구분에 따른 보도 범위

구분	내 용	예 시	보도가능 여부	
			당사자 동의	공익적 목적
내밀 영역	고도의 개인적 사항 인간 존엄 보호를 위한 본질적 내용	성관계, 성적 습관 내면적 양심(일기 등)	가능 (단, 최대한 신중할 것)	불가
비밀 영역	신뢰관계에 기해 표현된 정보 법령에 의한 보호(형법상 비밀침해죄, 비밀누설죄)	의사·약사·변호사·공인 회계사 등의 고객 정보 편지, 통신, 대화 내용	가능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
사사적 영역	제한된 범위 내의 사회적 연관성 자율적 생활영역 보호	가족, 가정 개인의 신상·건강·의료· 재산 관련 정보	가능	비교형량에 의해 가능
사회적 영역	인격의 발현이 애초에 주위 와의 접촉 하에 이루어지는 영역	직업 활동 사회(정당, 이익단체, 사회단체) 활동 일부 중대 범죄	가능	비교형량에 의해 가능 (공익>사익)
공개 영역	모든 사람에게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영역	사회·정치적 영역(방송 무대 출연, 집회) 국가 영역(의회에서의 발언, 법원 재판 등)	보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18)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9)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인격영역론’이라고 부른다.

20)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명예훼손법(박용상, 앞의 책) 444쪽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생활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기사의 위법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실무상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영역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김재형, 2014, 91쪽). 나아가, 언론계와의 협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활영역 구분은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방은 여성의 성적 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²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보존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사항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²²⁾

원고들의 집 내부, 원고 △△△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략)... 원고 △△△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이나 피해자 부모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²³⁾

이러한 판결의 태도와 생활영역 구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인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1) 이 판결에서 ‘비밀 영역’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상 학계에서 ‘내밀 영역’이라고 부르는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밀 영역’이라고 할 것인지 ‘내밀 영역’이라고 할 것인지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2)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 50737 · 52016 판결

3. 소결

공인의 성범죄혐의의 경우, ‘공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²⁴⁾ 성범죄사실은 사생활이 아니며 특히, 공인의 성범죄사실은 그 공개로써 당사자가 입는 인격권 침해보다 공중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인의 성범죄사실보도에는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없다. 그러나 성범죄혐의는 성범죄사실보도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성범죄혐의에 불과한 사건을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보도했다가 수사 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내밀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 관계의 무단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언론에서 내밀영역을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고의 아닌 다른 귀책사유, 즉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를 한 경우, 언론은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과실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IV. 나오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앞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혐의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보도를 대하는 사회 일반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단순 혐의보도만으로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수 있다. 물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5682 판결

단순 혐의보도만으로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절차상의 요청(피의사실공표죄)이 언론보도에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혐의보도를 자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범죄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보도에 공공성이 있으며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 유죄로 판명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범죄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사실로서 증명된 사항에 관한 것이지 아직 수사 중에 있는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고소·고발장의 접수라든가 세부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서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범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범죄혐의가 법원 판결로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정보를 공개한 이후 보도해야 한다.

셋째,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성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하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내밀영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하는 경우라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성범죄혐의 보도는 내밀영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 관련 보도인데다 그 시점마저 지나치게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언론은 과실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되는 사생활이 내밀영역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범죄혐의보도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²⁵⁾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소·고발이 접수된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범죄보도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것은 앞에서

25) 해당 제언 중에는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 나아가 일반형사범죄와 관련된 혐의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크거나 알권리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시의성이라든가, 홍보에 적극적인 기관의 성격 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형사절차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혐의보도를 자제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보도의 원칙’을 지켜 단정적 표현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급적이면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차분히 지켜본 후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시점 전후로 보도해야 한다.

둘째, 성범죄혐의보도는 사건 당사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도 자체를 금해야 한다. 성범죄혐의보도 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되면 제3자들에게는 해프닝에 그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최근 성범죄 여부가 문제되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과 B와 저의 진술 내용까지 멋대로 변질된 후, 보도돼 제 사생활은 심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딸이 성관계 몰카를 찍혔다는 데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B와 만나고 다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입니다)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후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라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²⁶⁾

셋째,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범죄보도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언론의 범죄보도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노성호(1997)는 보도관행을 형성하는 요인을 기자 개인 요인, 언론의 구조적 요인, 취재원 요인으로 나눠 각각의 요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노성호, 1997, 4~11쪽). 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출입처 관행의 폐지다. 출입처를 통하다 보니 언론사 간 특성의 차이가 없이 보도의 획일화 경향이 나타나고 특정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얇고 넓은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

26) <http://m.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7930>

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외부로부터 시작되기보다 언론계 내부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역시 해당 문제가 법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보도 관행에 대한 개선책 역시 언론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김기창 (2005).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일수 (1996). <형법각론>. 박영사.
- 김재형 (2014).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경북 문경: 언론중재위원회.
- 김택수 (2002). 판결로 본 연예 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언론중재>, 2002 겨울호.
- 노성호 (1997). 언론의 범죄보도관행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1/2월호.
- 노성호 · 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15). 2015 범죄분석. URL: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위수 (2016).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언론중재>, 2016 가을호.
- Kovach, B.,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이종욱 역 (2008).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 Stephens, M. (2006). *A History of News* (3rd ed.). 이광재·이인희 역 (2010). <뉴스의 역사> (3판). 커뮤니케이션스북스.